

20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 사업 안내

■ 용자 조건

연리 1.5%, 사업장당 10억원 한도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(총10년)

■ 지원 대상

- ① 근로자 고용(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) ※ 산재보험 자격취득자 1명 이상 필수
-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(산재보험 완납증명서 제출) ※ 미납시 지원 불가
- ③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이하(공단 자체 확인 예정)

■ 기관별 역할

[공단] 산재예방시설자금(정책자금) 용자 추천서(자금결정통보 및 투자확인서) 발급

[은행] 용자금 대출약정 체결 및 지급 (※ 일반 은행용자와 동일)

※ (주의) 은행에서 용자를 위해 담보 등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

■ 지원 설비

유해 또는 위험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

(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, S마크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·기구 등)

			① 좌식지게차 / 입식지게차 (전조등·후미등, 후진경보음) ② 캐빈형지게차 (전조등·후미등, 후진경보음, 후방접근감지센서, 후방카메라)
금속절단기	포장기계(랩핑기)	지게차	

※ 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에 미적용되는 적재하중 3톤 미만으로 후방충돌방지장치 또는 필수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함

					
프레스	절곡기·전단기	사출성형기	CNC런닝소우	인쇄기	연삭기

■ 신청 방법

소재지 관할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부천, 김포 ☞ 경기중부지사)

※ 지원조건 및 신청서류 등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사업안내 > 재정지원 > 산재예방시설자금용자 > 사업안내 참조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지원 보조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발급일		처리기한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	
	지택주소	(-)					
	지택전화			이동전화			
신청업체개요	신청업체명			사업장관리번호			
	사업자등록번호			사업개시번호			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		
	근로자수	명		회사전화번호			
	공사금액 (건설업만 기재)	원		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(건설업만 기재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 해당		
	업종			FAX 번호			
	소재지	(-)					
	신청설비 설치 소재지	(-)					
신청금액	총소요금액	천원		보조신청금액	천원		
	자체 부담금액	천원		용자신청금액	천원		
용자희망 금융기관	은행명	은행(중앙회)		지점			
	소재지	(-) (전화번호 :)					
<p>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5항 및 「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」 제9조, 제21조, 제28조의2,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</p>							